우수 선수 육성 지원규정

◎ 우수 선수 육성 지원규정

제정 2018. 9. 20.
개정 2021. 2. 25.
개정 2025. 2. 18.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우수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재원) ①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.

1. 본회 기본예산
2. 독지가의 특별 협찬금 및 기탁성금
3. 기타 수입금 등

제 3 조(선정대상) ① 우수 선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로 한다.

1. 국가대표 선수인자(올림픽, 아시아경기대회,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선수)
2.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
3.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팀(세부종목별)
4. 타시도에서 이적하는 선수 및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선수(추천선수)
5.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등

제 4 조(지원등급 및 선정) ① 우수 선수 지원 등급은 선수 개인실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책정하며,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.

② 우수 선수 인원 및 지원금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〈개정 2021. 2. 25, 2022. 8. 17.〉

③ 실업팀 소속 선수 및 본회직원(선수)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 〈개정 2025. 2. 18.〉

제 5 조(지급기간 및 지원제한) ① 우수 선수 육성지원비 지급 기간은 1월~10월까지 10개월로 하고, 상·하반기로 구분 지급한다. 〈개정 2025. 2. 18.〉

② 지원 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 선수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. 다만,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.

1. 선수등록이 취소 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선수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〈개정 2025. 2. 18.〉
2. 당해연도 선수등록 포기 및 선수등록 진행 후 전국장애인 동·하계체육대회에 미출전한 자〈개정 2025. 2. 18.〉
3. 타시도로 이적한 선수 및 실업팀에 입단한 자
4.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선수교체가 필요한 경우 〈신설 2025. 2. 18.〉

③ 지원중단 대상자는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된 익월부터 지원을 중단한다.

제 6 조(우수 선수 영입비 지급) ① 본도 경기력 증진을 위해 국가대표, 다득점, 다수 메달 획득자 등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 영입을 위해 별도의 영입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영입비용은 영입비 협상을 통해 상호 계약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2. 25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5. 2. 18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